



# 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502호 2019. 10. 17. (목)

## 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9-1107호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.....2
- 정선군 공고 제2019-111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
.....7
- 정선군 공고 제2019-111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
.....16
- 정선군 공고 제2019-1115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입법예고.....20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**공 고**

정선군 공고 제2019-1107호

**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**

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4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8일

정 선 군 수

- 1. 전자우편 주소 : jung7708@korea.kr
  - 2. 접수기간 : 2019. 11. 17.(일) ~ 2020. 2. 15.(토)
- ※ 전자우편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음.

[별지 제59호의4서식] (규칙 제136조의4제1항 관련) <개정 2019. 5. 30.>

<앞쪽>

신고·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뒤쪽에 기재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국외부재자신고서<sup>1)</sup>  
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

접 수	접수번호	
	접수일자	
	접수자	(서명)

성 명 <sup>2)</sup>	한 글	영 문 (대문자)				
여 권 번 호		[Red dotted box]			* 여권번호는 왼쪽부터 적습니다.	
신 분 예 따 른 구 분 <sup>3)</sup> ※해당 칸에 [표]한 후 기재)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	주 민 등 록 번 호	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	말 소 된 주민등록번호	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	주 소 (주민등록표상)	(시·도)	(구·시·군)	(읍·면)	(대로·로·길)
		대 한 민 국 최 종 주 소 지	(시·도)	(구·시·군)	(읍·면)	(대로·로·길)
		생 년 월 일	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	성 별 (해당 칸에 [표])	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	
등록기준지(본적지)	(시·도)	(구·시·군)	(읍·면)	(대로·로·길)		
부 모 성 명 <sup>4)</sup>	아버지 성 명	[Red dotted box]	어머니 성 명	[Red dotted box]		
연 락 처 ※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전화번호 <sup>5)</sup> (가정·직장 등)	(국가번호)	(지역번호)	(전화번호)	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	
	휴대전화번호 <sup>5)</sup>	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 - [Red dotted box]				
	전자우편 <sup>6)</sup> (E-mail)	[Red dotted box]				
국 외 거 소 <sup>7)</sup> (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) ※ 반드시 점선 안에 기재	거류국명	[Blue dotted box]	우편번호	[Blue dotted box]		
	주 소	[Blue dotted box]			<input type="checkbox"/> 관을 가로 신고할 사람 (표 후 "주소"칸에 공관명만 기재) 투표예정공관 <sup>8)</sup>	
외국국적 보유여부 ※ 복수 국적자만 기재	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		
	국적보유 국가명					
	외국국적 취득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생 <input type="checkbox"/> 혼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입양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	
본인은 「국적법」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「공직선거법」(제218조의4)·(제218조의5)에 따라 (국외부재자신고)·(재외선거인 등록신청)를(을) 하며, 선거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, 주민등록정보, 수형정보, 여권정보 등의 개인신상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						
년 월 일 (신 고 인) · (신 청 인) <sup>9)</sup> : (서명 또는 날인)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○ ○ 구·시·군의 장 귀하						

\*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재외공관에 신고·신청서를 제출(병문, 우편 또는 전자우편)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ova.nec.go.kr)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유 의 사 항

- 1. 이 신고·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이 신고·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·신청인에게 불이익(재외선거인명부등 미등재, 선거정보 수신불가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은 정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- 3. 거짓으로 신고·신청을 한 사람 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·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 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작 성 요 령

- 1. "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"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 표시를 하고, "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"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- 2. "성명"칸에는 여권에 적혀있는 성명(영문 포함)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.
  - ☞ 다만, 여권의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이 다른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성명을 적습니다.
- 3. "신분에 따른 구분"칸에는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"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"를 적고,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"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대한민국 최종주소지"를 적어야 하며,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칸에  표시 후 "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등록기준지(본적지)"를 적고 "성별"의 해당 칸에 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- 4. "부모 성명"칸에는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·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(본적지)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(호적)상의 "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"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- 5. "전화번호"와 "휴대전화번호"칸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·사무실 등의 전화번호(국가번호-지역번호-전화번호)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  - ☞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국외부재자·재외선거인 요건확인, 우편물 수취여부 확인, 투표기간·장소 등 안내, 그 밖에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되므로 외국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대한민국 내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6. "전자우편(E-mail)"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·발송하는 정당·후보자 정보자료 송부,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여부 통지, 이의신청 결과 안내, 투표기간·장소·지참물 등 각종 선거관련 정보·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되므로 이러한 자료 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- 7. "국외거소"칸은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(현지어를 추가로 적을 수 있음)로 반드시 점선 안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.
  - ☞ 다만, 직장·생업·이사·주소불확정·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공관을 거소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 표시 후 "주소"칸에 공관명만을 적습니다.
- 8. "투표예정공관"칸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의 명칭을 적습니다.
- 9. 끝부분의 "(신고인)·(신청인)"에는 반드시 본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.

## 국외부재자신고 안내문

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신고기간 : 2019년 11월 17일 ~ 2020년 2월 15일(91일간)

□ 대 상 자

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

-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-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

□ 제 출 처

-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(재외투표관리관)에 제출
-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게 제출

□ 제출방법

중앙선관위 홈페이지(<http://ova.nec.go.kr> 또는 <http://ok.nec.go.kr>), 전자우편(jung7708@korea.kr), 서면(우편 또는 인편)으로 신고

※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.

□ 제출서류

- 국외부재자신고서

※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.

# 관 계 법 조 문

## 공직선거법

[시행 2018. 4. 6.] [법률 제15551호, 일부개정]

**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**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(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·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(이하 이 장에서 "국외부재자 신고기간"이라 한다) 서면·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·시·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1. 7., 2012. 10. 2., 2014. 1. 17., 2015. 8. 13.>

- 1.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
- 2.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4. 2. 13., 2015. 8. 13., 2015. 12. 24.>

- 1. 성명
- 2. 주민등록번호
- 3. 주소
- 4. 거소(로마자 대문자로 적되,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)
- 5. 여권번호

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·시·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10. 2.>

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·시·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10. 2.>

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·시·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5. 12. 24.>

정선군 공고 제2019-1113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5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가. 지적재조사 책임성 강화, 장애등급 폐지 관련 전담인력 확충, 버스공영제 안정적 도입, 건설공사 품질·안전관리 강화,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확충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(안 제2조)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629명→634명 (증 5명)
- 집행기관의 총수 : 618명→623명 (증 5명)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1명 (변동 없음)

나.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일부 조정(별표 2)

- 일반직 비율조정 : 6급(23%이내 → 24%이내), 7급(31%이내 → 30%이내)

다.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(별표 3)

- 4급·5급 : 본청(2), 직속기관(1) (변동 없음)
- 5급 : 본청(12), 의회(2), 직속기관(3), 사업소(1), 읍면(9) (변동 없음)
- 6급이하 : (572) ⇒ (577) (증 5명)
- 지도직 : (20) ⇒ (20) (변동 없음)

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)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의견

《 의견 제출 및 문의처 》

●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, 정선군청 행정과

● 전 화 : 033 - 560 - 2233

● F A X : 033 - 560 - 2590

● E-mail : ksh0291@korea.kr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“629명”을 “634명”으로 하고 제1호중 “618명”을 “623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##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 관련)

## 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 문 경력관
비 율	1% 이내	5% 이내	24% 이내	30% 이내	23% 이내	16% 이상	1%이내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## 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

비고 : 읍·면·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##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34	634				
정무직계	1	1				
군수	1	1				
일반직 계	609	609				
4급	1	1				
4급 . 5급	3	2		1		
5급	27	12	2	3	1	9
6급 이하 계	577	577				
전문경력관 계	1	1				
연구직 계	4	4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4	4				
지도직 계	20	20			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18	18				

#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29명에서 634명으로  
조정에 따른 인건비 총 지출액 변동

나. 관련 조문 : 안 제2조

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5명이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대비 2.8%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
- 2019년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19년 총액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 인건비(73,999천원)를 적용

#### 나. 추계 결과 : 2020년~2024년까지 총 2,011,298천원 지출 예상

- 2020년 : 73,999천원 × 5명 × 102.8% = 380,355천원
- 2021년 : 76,071천원 × 5명 × 102.8% = 391,005천원
- 2022년 : 78,201천원 × 5명 × 102.8% = 401,953천원
- 2023년 : 80,391천원 × 5명 × 102.8% = 413,208천원
- 2024년 : 82,642천원 × 5명 × 102.8% = 424,777천원

### 3. 관련 의견

- 해마다 공무원 보수 상승률 변경에 따라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

작성자     행정과장   유   홍   열

##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

### 1. 부문별 재원분담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의존 재원	소 계	380,355	391,005	401,953	413,208	424,777	2,011,298
	보조금						
지 방 교부세	소 계	380,355	391,005	401,953	413,208	424,777	2,011,298
	지방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세외수입	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### 2. 관련의견

- 일반직 공무원 5명 증원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 보통교부세로 교부

### 3. 협의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
- 2019년 기준인건비 기준 정원 통보(행정안전부) : 2019. 01. 03.

### 4. 작 성 자

행정과장 유 홍 열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정선군(이하 “군” 이 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629명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618명</p> <p>2. ( 생 략 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----- ----- ---- 634명 -----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23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

정선군 공고 제2019-1114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15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가. 지적재조사 책임성 강화, 장애등급 폐지 관련 전담인력 확충, 버스공영제 안정적 도입, 건설공사 품질·안전관리 강화,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확충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 인력 재배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관리 기관별, 직렬별 정원을 조정.

2. 주요내용

가.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·직렬별 정원 조정(별표)

○ 총 629명 ⇒ 총 634명 (증 5명)

나. 조정내역

○ 분야별 증원 : 9명 (단위 명)

공무직 대응 전담인력	장애등급제 폐지 전담인력	버스공영제 인력 보강	건설공사 품질 안전관리	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확충
1명 행9 1	1명 사복8 1	1명 행9 1	2명 시(토목)8 1 시(토목)9 1	4명 보건·간호7 1 보건·간호8 3

○ 분야별 감원 : 4명 (단위 명)

청사관리 (회계과)	인력물자동원관리 (안전과)	일반행정 지원 (신동읍)	일반행정 지원 (화암면)
1명 사무운영9	1명 전기운영9	1명 기계운영9	1명 기계운영9

○ 부서별 증원 : 9명 (단위 명)

행 정 과 (공무직 대응)	복 지 과 (장애등급제 폐지)	안 전 과 (버스공영제 도입)	건 설 과 (건설공사 품질관리)	보 건 소 (치매안심센터 운영)
1명 행정9 1	1명 사복8 1	1명 행정9 1	2명 시설8 1 시설9 1	4명 보건·간호7 1 보건·간호8 3

○ 부서별 감원 : 4명 (단위 명)

회 계 과 (청사관리)	안 전 과 (인력물자동원관리)	신 동 읍 (일반행정 지원)	화 암 면 (일반행정 지원)
1명 사무운영9	1명 전기운영9	1명 기계운영9	1명 기계운영9

### 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)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의견

#### 《 의견 제출 및 문의처 》

-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, 정선군청 행정과
- 전 화 : 033 - 560 - 2233
- F A X : 033 - 560 - 2590
- E-mail : ksh0291@korea.kr

정선군 규칙 제 호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

정선군 공고 제2019-1115호

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10월 15일

정 선 군 수

1. 제안이유

가.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업무의 일원화로 시설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및 준비절감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업무분장 조정 (제4조 [별표1~4] 관련)

- (이관) 도시과 :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
- (흡수) 상하수도사업소 :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

3. 의견제출

○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)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의견

《 의견 제출 및 문의처 》

- 주 소 :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, 정선군청 행정과
- 전 화 : 033 - 560 - 2233
- F A X : 033 - 560 - 2590
- E-mail : ksh0291@korea.kr

정선군 규칙 제 호

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~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8.2.20.>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29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